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2조 872 억원으로 기정예산(20조 5,694억원) 보다 1조 5,178억원(7.3%)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당초예산(19조 7,828억 8천 6백만원) 보다 2조 3,043억 3천 4백만원(11.6%)이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감	
합 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시 세		19,552,425	19,552,425	-	-
세외 수입	경상적	56,917	56,917	-	-
	임시적	171,740	171,740	-	-
보조금	국고 보조금	1,704	1,704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 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 감	
일반회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지방세 (계)	19,552,425	19,552,425	-	-
보 통 세	17,495,135	17,495,135	-	-
취 득 세	4,632,967	4,632,967	-	-
주 민 세	594,465	594,465	-	-
재 산 세	2,998,999	2,998,999	-	-
자 동 차 세	1,104,975	1,104,975	-	-
레 저 세	124,873	124,873	-	-
담 배 소 비 세	564,349	564,349	-	-
지 방 소 비 세	2,041,427	2,041,427	-	-
지 방 소 득 세	5,433,080	5,433,080	-	-
목 적 세	1,835,212	1,835,212	-	-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300,925	-	-
지 방 교 육 세	1,534,287	1,534,287	-	-
지 난 년 도 수 입	222,078	222,078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0년 기정(당초)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외수입(계)	228,657	228,657	-	-
경상적세외수입	56,917	56,917	-	-
공유재산임대료	14,028	14,028	-	-
기타사용료	2,301	2,301	-	-
증지수입	724	724	-	-
공공예금이자수입	35,404	35,404	-	-
기타이자수입	4,460	4,460	-	-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171,740		
시유재산매각수입	57,957	57,957		
과정금및과태료등	680	680	-	-
기타수입	106,037	106,037	-	-
체납처분수입	2	2	-	-
그외수입	106,035	106,035	-	-
시금고출연금 법인카드캐쉬백적립금	103,369	103,369	-	-
시유재산위탁예금이자수입	156	156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액	1,253	1,253	-	-
세외수입환급금 시효소멸분	1,256	1,256	-	-
지난년도수입	7,066	7,066	-	-

보조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국고보조금등	1,704	1,704	-	-
국고보조금	1,704	1,704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8,857억원으로 기정 예산 2조 7,059억원 대비 6.6%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 감		
총 계	2,705,942	2,885,689	179,747	6.6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	-
	재무활동	-	-	-	-
	사업비	1,920,452	2,100,199	179,747	9.3
	교부금 등	1,864,287	2,076,071	211,784	11.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 정		증감	비율
합 계	1,897,505	1,897,505	2,077,252	179,747	9.5
재정보전금	1,459,998	1,459,998	1,607,945	147,947	10.1
시세 징수교부금	404,289	404,289	468,126	63,837	15.7
부동산 가격공시	-	-	781	781	10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북부지검 재산매입)	33,218	33,218	400	△32,818	△98.7

II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2조 872억원으로 기정예산(20조 5,694억원) 대비 1조 5,178억원(7.3%) 증액된 수준임.

※ 당초예산(19조 7,828억 8천 6백만원) 보다 2조 3,043억 3천 4백만원(11.6%)이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3차 추경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486,577백만원 = 제2회 재무국 추경예산(안) 467,417백만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19,16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용자원 잔여분 1,059억원, 감채기금 적립 예정액 중 재난정책 수요자금 2,425억원 반영

※ 법정잉여금 :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잔여분 1,194억원, 재정보전금 정산분 1,479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 638억원, 교육청전출금 정산분 3,767억원, 타회계 등 전출 1,115억원, 감채기금 적립 3,500억원 반영

○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민생경제정책수요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경비(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부담 및 감채기금 적립 등을 위하여 법정잉여금을 세입 편성하려는 것임.

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 2019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전망에 따른 세입은 28조 9,755억원, 세출은 26조 5,917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세입 - 세출)은 2조 6,445억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2,608억원)와 보조금반납액(793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2조 1,419억원) 대비 1,625억원이 증가(7.6%)한 2조 3,044억원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망〉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B)			실제보조금 집행잔액 (C)	순 세계 잉여금 (A-B-C)
		계(a+b)	집행액(a)	이월액(b)		
27조 1,348	28조 9,755	26조 5,917	26조 3,309	2,608	793	2조 3,044

* [초과세입액 1조 8,407억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4,638억원]

〈최근 5년간 연도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 (A) + (B) - (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463,761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24,333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03,00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38,571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19,901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중 가용재원으로서의 2020년도 재무국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대상액은 5,925억원임.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무경비(1조 7,118억원) = 가용재원(5,925억원)

〈 법정 의무 경비 〉

◆ 법정 의무 경비(A+B+C+D)	1조 7,118억원
○ 자치구전출금(A)	6,311억원
- 조정교부금	4,194억원
▶ 보통세 증수분 × 22.6%	
- 재정보전금	1,479억원
▶ 특별시분재산세 증수분 × 100.0%	
- 시세징수교부금	638억원
▶ 자치구 위임징수 시세 증수액의 3%	
※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제외	
○ 교육청전출금(B)	3,767억원
- 법정전출금	1,976억원
▶ 보통세 증수분×10% + 담배소비세 증수분 45%	
- 지방교육세 전출	1,791억원
▶ 지방교육세 증수분 등 × 100%	
○ 타회계전출(C)	1,115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액(100%)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 79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소방안전특별회계(78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246억원)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증수분 100%, 지방소비세 증수분의 35%	
○ 감채기금(D)	5,925억원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경비(1조 1,193)) × 50%	

○ 이 중 지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세입예산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4,866억원을 제외한 잔여액 1,059억원과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2020.5.19.시행)을 통하여 감채기금 적립 대상 금액(5,925억원) 중 2,4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 총 3,48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순세계잉여금 총액 8,350억원 = 예산편성기준상 5,925억원 + 조례개정 추가액 2,425억원

※ 기획조정실에서는 당초 5,925억원 중 3,500억원만 감채기금에 적립(예정)

※ 조례 개정 내용 :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채기금의 기금조성재원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3차 추경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486,577백만원 = 제2회 재무국 추경예산(안) 467,417백만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19,160백만원

〈재무국 일반회계 잉여금 구분〉 (단위 : 백만원)

구 세목	2019회계 잉여금	세입편성				비고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잔액	
보전수입 등	2,304,443	342,917	443,660	1,517,856	0	
잉여금	2,304,443	342,917	443,660	1,517,856	0	
순세계 잉여금	835,027	342,917	143,660	348,450	0	
법정잉여금	1,469,406	-	300,000	1,169,406	0	법정의무 경비

※ 순세계잉여금 총액 8,350억원 = 예산편성기준 상 5,925억원 + 조례개정 추가액 2,425억원

〈감채기금 관련 추가경정편성 현황〉

구분	통계목	금액
감채기금	순세계잉여금 (재난정책 수요자금)	2,425억
	법정잉여금	3,500억

○ 다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2020.5.19.시행)을 통하여 감채기금 적립 대상 금액(5,925억원) 중 2,425억원을 가용재원(순세계잉여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시행 2020. 5. 19.>

종 전	현 행
<p>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이 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생략)</p> <p>2. ~ 4. (생략)</p>	<p>제3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p> <p>1. -----이 경우, ----- ----- ----- -----.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 법정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1,194억원), 재정보전금 정산분(1,479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638억원), 교육청전출금 정산분(3,767억원), 타회계 전출(1,115억원) 등 법정 의무경비와 감채기금* 적립금(3,500억원)이 반영된 것임.

* 당초 감채기금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의 50%(5,925억원)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채기금 적립액 중 2,4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3천 5백억원임.

※ 가용자원(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법정경비(1조 1,193))×5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3.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8,857억원으로 기정 예산 2조 7,059억원 대비 6.6%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 감		
총 계	2,705,942	2,885,689	179,747	6.6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	-
	재무활동	-	-	-	-
	사업비	1,920,452	2,100,199	179,747	9.3
	교부금 등	1,864,287	2,076,071	211,784	11.4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자치구 '재정보전금 정산분(1479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638억원) 등의 법정 전출금 지출 및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 표본조사비(781백만원)를 신설하는 등 3건의 증액과, 구) 북부지방검찰청 부지 매입비(328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건에 1,797억원(6.6%)을 증액하려는 것임.

〈2020년도 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합 계	2,705,942	2,885,689	179,747	6.6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	-
	사업비	1,920,452	2,100,199	179,747	9.3
	소계	1,897,505	2,077,252	179,747	9.5
	재정보전금	1,459,998	1,607,945	147,947	10.1
	시세 징수교부금	404,289	468,126	63,837	15.7
	부동산 가격공시	-	781	781	10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북부지검 재산매입)	33,218	400	△32,818	△98.7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합계			1,897,504,550	179,747,358	2,077,251,908	9.5%
자산 관리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소계	33,218,000	△32,818,000	400,000	△98.8%
		시설비	33,218,000	△32,818,000	400,000	
세제과	부동산 가격 공시	소계	-	781,000	781,000	100%
		사무관리비	-	781,000	781,000	
	재정보전금	소계	1,459,998,000	147,947,148	1,607,945,148	10.1%
		자치구기타 재원조정비	1,459,998,000	147,947,148	1,607,945,148	
세무과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소계	404,288,550	63,837,210	468,125,760	15.8%
		징수교부금	404,288,550	63,837,210	468,125,760	

가.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동 사업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 매입하기로 결정된 부동산(구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매입 대금 분납금으로 편성한 시설비의 98.2%(328억 1천 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소계	33,218,000	△32,818,000	400,000	△98.8%
	시설비	33,218,000	△32,818,000	400,000	

〈 당초 협의매입 대금 지급 계획〉 (단위: 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0	0	32,818	32,818	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재산교환〉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00,000	(x-) 33,218,000	(x-) -32,818,000
시설비	(x-) 400,000	(x-) 33,218,000	(x-) -32,818,000

〈예산과목 증감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설비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입비 감정평가금액 656억원의 50% = -32,818,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재원 마련 필요

- 현재 대상 부동산은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 간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등 4개 공공시설로 활용 중에 있음.

건 물 명		활용계획 (사업부서)	배 치 도
북부 지검 (3개동)	본관 별관동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여성정책담당관)	
	신관동	노원구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구치감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북부 지법 (3개동)	본관동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별관동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신관동	서울창업디딤터 (투자창업과)	

※ 무상사용기간 : '18.4~서울시가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시까지

- 재무국은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시급히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시기를 2021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의를 통해 2021년 본예산에 매입금 편성 및 매매계약 체결 예정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 2018년 4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취득을 앞둔 시점에 돌연 대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 출자기관인 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아닌지, 지연이자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행정 신뢰성 손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22번지
- 사업기간 : '13.9월 ~ '21년(기본계획 수립~소유권 이전)
- 소요예산 : 65,637백만원 <시비 100%> / 일반회계
- 매입규모
 - 토 지 : 1필지 13,209.7㎡ [토지소유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건 물 : 6개동, 연면적 16,255.60㎡

건물명칭	용도	면적(㎡)	활용부서
계		16,255.60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5,723.57	여성정책 담당관
B동(구치감)	공공업무시설(서울생활사박물관)	698.45	박물관과
C동(검찰신문)	공공업무시설(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971.13	사회적경제 담당관
C동(법원신문)	공공업무시설(서울창업디딤터)	2,399.89	투자창업과
B동(법원별관)	공공업무시설(서울생활사박물관)	1,804.08	박물관과
A동(법원본관)	공공업무시설(서울생활사박물관)	4,658.48	박물관과

- 계약방법 : 협의매입

나. 부동산 가격 공시

- 동 사업은 부동산 가격 공시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공시지가 실태파악 표본조사비 7억 8천 1백만원(수수료)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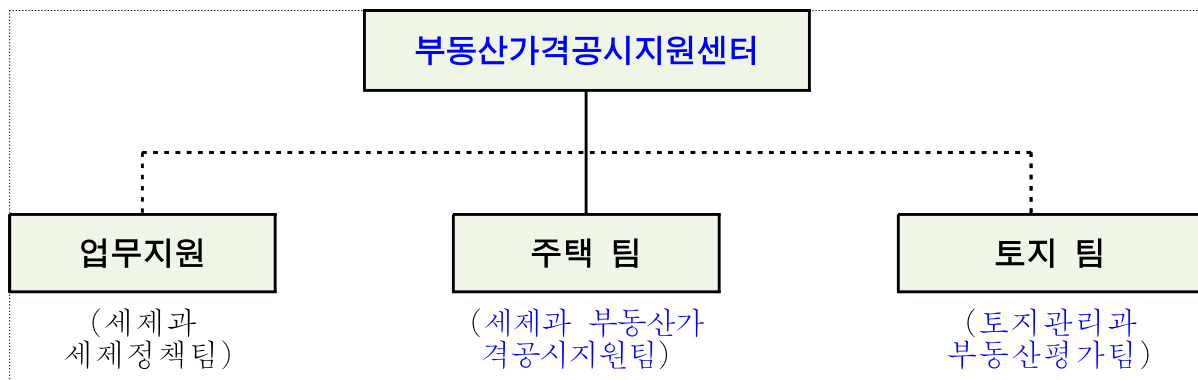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부동산 가격 공시	소계	-	781,000	781,000	100%
	사무관리비	-	781,000	781,000	

〈예산과목 증감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표본조사비 검증수수료 781,000,000원 = 781,000천원
	증감사유
	- 25개구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 분석 및 균형성 검증

- 본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실화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2020.3.출범)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2020년 본예산에 필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임.



- 재무국은 본 사업 추진으로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서울시의 역할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 단독주택 53%, 토지 65% 수준

- 다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있는바,

- 서울시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는지, 표본조사의 결과가 공시가격에 구속력을 얻지 못하여 사업예산이 사장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시도 통제반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고 있으나, 센터의 업무는 주로 시·군·구 지원, 성과평가 등에 그치고 있음.

〈공시가격 결정 기관 등〉

구분	토 지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지		표준주택	개별주택
결정기관	국토부	자치구	국토부	국토부	자치구
공시대상	29,152필지	880,858필지	2,478,646호	22,228호	305,218호
공시일	2.13	5.29	4.29	1.23	4.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공시에 관한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

□ 표준지·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 조사·산정 절차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 구청장

- 표준지·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지·단독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지·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 산정
- 산정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토지, 주택은 한국감정원) 후 소유자 의견 청취,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 조사·산정 절차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조사·산정기관 : 한국감정원)

- 조사·산정 절차



다.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6,079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1조 4,599억 9천 8백만원) 대비 10.1%(1,479억 4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 지방세기본법상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
 ※ 추경액: 기존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4,600억원에 19년 결산결과 초과 징수분(1,479억원)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¹⁾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교부액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933,536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19년 귀속 교부액=2018년 결산상 정산(1,479억원)+2018년 예산액(1조 4,600억원)

1) -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임.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 결정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교부액	31,640	32,380	33,280	33,980	34,480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자치구 세입(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1,479억 4천 7백만원 (10.1%)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1,459,998	1,607,945	147,947	10.1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459,998	1,607,945	147,947	10.1

-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도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임.

<재산세과세표준(부동산)>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지방세법110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상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109조) • 주택:시가표준액의60% • 토지:시가표준액의70% • 건물:시가표준액의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는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있다.

※ 공동재산세과세대상은항공기, 선박및도시지역분재산세는제외됨(지방세기본법제9조)

○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5배(강남3,400억,강북686억)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 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7년도	○강남,도봉구간재산세세입격차가16.7배(강남4,289억,도봉257억)에서4.6배(강남2,577억,도봉561억)로완화
2018년도	○강남,도봉구간재산세세입격차가17.7배(강남4,792억,강북271억)에서4.7배(강남2,869억,강북610억)로완화
2019년도	○강남,도봉구간재산세세입격차가20.1배(강남5,712억,강북284억)에서5.0배(강남3,400억,강북686억)로완화

〈2019년도재산세공동과세로인한재정격차완화효과,강북구기준〉

-2019결산액기준,강북구기준-(단위:억원/배)

구분	2019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27,200	13,600	13,600	27,200	0	-	-
종로구	982	491	544	1,035	53	3.5	1.5
중구	1,432	716	544	1,260	△172	5.0	1.8
용산구	1,244	622	544	1,166	△78	4.4	1.7
성동구	786	393	544	937	151	2.8	1.4
광진구	594	297	544	841	247	2.1	1.2
동대문	526	263	544	807	281	1.9	1.2
종랑구	364	182	544	726	362	1.3	1.1
성북구	562	281	544	825	263	2.0	1.2
강북구	284	142	544	686	402	1.0	1.0
도봉구	290	145	544	689	399	1.0	1.0
노원구	504	252	544	796	292	1.8	1.2
은평구	510	255	544	799	289	1.8	1.2
서대문	496	248	544	792	296	1.7	1.2
마포구	1,084	542	544	1,086	2	3.8	1.6
양천구	786	393	544	937	151	2.8	1.4
강서구	952	476	544	1,020	68	3.4	1.5
구로구	568	284	544	828	260	2.0	1.2
금천구	388	194	544	738	350	1.4	1.1
영등포	1,200	600	544	1,144	△56	4.2	1.7
동작구	634	317	544	861	227	2.2	1.3
관악구	554	277	544	821	267	2.0	1.2
서초구	3,240	1,620	544	2,164	△1,076	11.4	3.2
강남구	5,712	2,856	544	3,400	△2,312	20.1	5.0
송파구	2,638	1,319	544	1,863	△775	9.3	2.7
강동구	870	435	544	979	109	3.1	1.4

*특별시분재산세(13,600억원)은 2019년도중 실제세입금(2019세입예산액:1,212,025백만원)

라.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681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4,042억 8천 9백만원) 3,749억 8천 2백만원 대비 15.8%(638억 3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별예산증감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시세징수교부금	404,289	468,126	63,837	15.8
징수교부금(308-02)	404,289	468,126	63,837	15.8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²⁾(「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임.

-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 세입(1조 7,934억원)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 등 정산분(2조 1,279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638억 3천 7백만원(15.8%)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이 되는 정산금의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와 매년 과다한 세입예산과 결산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3년간지방세세입예산대비결산현황> (단위: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수납율 (B/A)
2019	182,213	182,213	204,581	22,368	112.3
2018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2017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_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 %)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로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산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동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진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중랑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북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북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봉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노원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평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포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천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서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구 로 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 천 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 작 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 약 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 초 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 남 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 파 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 동 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681억원(2019년 결산상)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 동남권역 징수교부금 관련 분석 자료(2018년 기준)>

구분	징수교부금			징수비용 비율(%)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전 재정수요충족도(%)
	교부액 (백만원)	교부율(%)	점유율		
합계(평균)	118,197	(2.29)	28.7	(0.44)	(122.5)
강남구	55,869	2.31	13.6	0.29	182.3
서초구	33,799	2.42	8.2	0.45	97.9
송파구	28,529	3.05	6.9	0.58	87.4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346,794	100.0	377,989	100.0	419,907	100.0	424,431	100.0	220,866	100.0
종로	12,859	3.7	13,342	3.5	16,147	3.8	16,150	3.8	7,704	3.5
중구	19,942	5.8	21,496	5.7	24,141	5.7	25,943	6.1	12,488	5.7
용산	10,888	3.1	12,849	3.4	14,774	3.5	13,579	3.2	7,009	3.2
성동	9,620	2.8	11,758	3.1	12,975	3.1	12,574	3.0	7,177	3.2
광진	8,915	2.6	9,628	2.5	11,035	2.6	10,837	2.6	5,387	2.4
동대문	8,993	2.6	9,645	2.6	11,080	2.6	10,909	2.6	5,482	2.5
중랑	8,462	2.4	8,985	2.4	9,502	2.3	9,687	2.3	4,890	2.2
성북	10,161	2.9	10,804	2.9	12,136	2.9	12,147	2.9	5,940	2.7
강북	6,356	1.8	6,668	1.8	7,193	1.7	7,142	1.7	3,616	1.6
도봉	7,069	2.0	7,471	2.0	7,818	1.9	8,095	1.9	3,844	1.7
노원	11,470	3.3	11,747	3.1	12,475	3.0	12,208	2.9	6,174	2.8
은평	10,152	2.9	11,300	3.0	11,984	2.9	11,887	2.8	5,603	2.5
서대문	8,482	2.4	8,540	2.3	9,302	2.2	9,524	2.2	5,038	2.3
마포	14,449	4.2	15,249	4.0	17,379	4.1	17,626	4.2	9,662	4.4
양천	11,803	3.4	12,365	3.3	13,418	3.2	13,472	3.2	6,789	3.1
강서	15,620	4.5	19,103	5.1	20,295	4.8	21,046	5.0	11,082	5.0
구로	11,436	3.3	13,288	3.5	14,836	3.5	14,366	3.4	7,569	3.4
금천	8,538	2.5	9,594	2.5	11,124	2.6	11,760	2.8	6,644	3.0
영등포	20,194	5.8	21,679	5.7	25,845	6.2	26,475	6.2	14,966	6.8
동작	9,795	2.8	10,400	2.8	11,312	2.7	11,195	2.6	5,688	2.6
관악	10,511	3.0	11,127	2.9	12,134	2.9	11,732	2.8	5,826	2.6
서초	27,607	8.0	30,947	8.2	33,882	8.1	35,277	8.3	16,900	7.7
강남	48,017	13.8	48,716	12.9	56,277	13.4	55,372	13.0	29,765	13.5
송파	24,021	6.9	27,712	7.3	29,336	7.0	31,414	7.4	15,087	6.8
강동	11,434	3.3	13,577	3.6	13,507	3.2	14,013	3.3	10,535	4.8

※구청별실제집행한내역임.

<2020년재무국전출금세목별재원표>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예산액	시세징수교부금 예산편성			공동재산세전출금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 율	교부금	교부대상	교부 율	교부금
합 계	19,552,425	13,302,875	3%	404,289	1,429,218	100%	1,429,218
보 통 세 계	17,495,135	비대상					
취 득 세	4,632,967	4,632,967	3%	138,989			
레 저 세	124,873	124,873	3%	3,746			
담 배 소 비 세	564,349	비대상					
지 방 소 비 세	2,041,427	비대상					
주 민 세	594,465	594,465	3%	17,834			
지 방 소 득 세	5,433,080	5,433,080	3%	162,992			
재 산 세	2,998,999	비대상					
특 별 시 분	1,414,625	비대상			1,414,625	100%	1,414,625
도 시 지 역 분	1,584,374	1,584,374	3%	47,531			
자 동 차 세	1,104,975	비대상					
소 유 분	632,191	632,191	3%	18,966			
주 행 분	472,784	비대상					
목 적 세 계	1,835,212	비대상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300,925	3%	9,028			
지 방 교 육 세	1,534,287	비대상					
지 난 년 도 시 세	222,078	173,434	3%	5,203	14,593	100%	14,593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